

국립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내규

제정: 2024년 4월 11일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립목포대학교 관광학과 학부 과정과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과(석사), 문화관광학협동과정(박사), 경영행정대학원 관광·호텔·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과정(석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교수회의)

1. 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 학과 교수회의는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학과장이 그 의장이 된다.
3.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결정할 학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학부 및 대학원 장학생 선발
 - 2) 학부생 산업체 현장 실습
 - 3) 학부 및 대학원생의 졸업요건
 - 4) 학부와 대학원의 학기별 개설 교과목 결정 및 시간표 편성
 - 5)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의 개정
 - 6) 학과 예산의 편성과 결산
 - 7) 단과대학 학장에게 학과장 추천
 - 8) 기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학과 전공 교육과정위원회 및 전공역량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학과의 역량 기반 전공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공 교육과정위원회와 전공역량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양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이 맡으며 학과장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반영한다.

위원회	기능과 역할	구성	비고
학과 전공 교육과정 위원회	• 교육환경 변화 분석과 교육수요자 요구분석 등에 관한 사항 • 학과 인재상, 교육목표, 전공역량 설정에 관한 사항 • 전공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역량 기반 교수·학습 설계, 운영에 관한 사항 • 전공 교육 과정 운영평가,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전공역량과 연계한 비교과 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전공 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과장 • 전임교원 ※ 강사, 비전임교원, 재학생 및 외부전문가 약간 명	• 위원회 관련 모든 활동은 기록하여 보관 (4년)
학과 전공역량 평가위원회	• 전공역량의 타당성 검증에 관한 사항 • 전공역량 진단 도구 개발 및 전공역량 증진도 평가, 환류 등에 관한 사항 • 전공역량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	• 학과장 • 소속 전임교원 • 학생 및 외부전문가 약간 명	

제4조(학부 운영)

1. 학부 과정의 현장 실습 운영은 국립목포대학교 현장 실습 운영 규정에 따르며, 학과의 운영세칙은 다음과 같다.
 - 1)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학생의 현장 실습 희망 분야와 현장 실습 산업체를 연계 배정하여야 한다.
 - 2) 학과로부터 산업체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 자력으로 현장 실습 산업체와 연계하여 교과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현장 실습 산업체의 적정성 여부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 학부 과정의 졸업을 위해서는 학점 이수 이외에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졸업논문 통과
 - 2) 공인 어학 시험 (택 1종)
 - 토익 550점 이상, 토스 Intermediate Mid 1 이상, 오픽 Intermediate Mid 1 이상, 텡스 450점 이상, 토플 CBT 143점 이상, 토플 IBT 50점 이상, 토플 PBT 463점 이상, JPT 460점 이상(JLPT 3급 이상), HSK 4급 이상, TOPIK 한 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외국인유학생만해당)
 - 3) 산업체 현장 실습 320시간 이상
 - 4) 관광 관련 자격증 취득(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등)
3.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회는 재학생의 선출에 의한 자율 기구로서,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필요한 약간 명의 부장을 두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학생회의 사업은 자율적으로 수행하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조(대학원의 운영)

1.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및 경영행정대학원 학사일정에 의하여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학과 조교는 매 학기 초에 학생별 지도교수 현황을 파악하여 교수회의에 알려야 한다.
 - ② 학과 교수회의에서는 필요시 석사·박사과정의 지도교수 조정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다.
2. 석사 및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전공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학생이 수강한 교과목 중 전임교원 별로 한 과목씩 출제하며, 외국어 교과목 출제위원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내규 변경 및 준용)

1. (내규 변경)이 내규의 변경은 학과 교수 회의의 결정을 통해 가능하다.
2. (준용 조항)이 내규에 없는 사항들은 국립목포대학교 학칙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3. 본 내규는 국립목포대학교 학칙과 관련 규정에 우선 할 수 없다.